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서종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0
----------	-------

제안연월일 : 2017. 3. .

제안자 : 서종수, 이학래,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봉수,  
전승학

##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나.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구조가 심각한 불균형상태인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제안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전국시군구, 전국지방자치단체의회, 각 정당대표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할 지역의 현안문제까지도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단순 집행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암담하기 그지없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행·재정적 권한은 겨우 20% 정도밖에 안되며, 최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110여개 단체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자치이고 거의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유능한 인재의 지방 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유급제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로 시행하고 있어 의회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였으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관심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4. 4.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3월 27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2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7년 4월 4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김건택

### 가. 제안이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료 안정화 및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안 제5조)
-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안 제6조)
- 상생협력상가협의체 설치(안 제7조)
-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유준상)

- 마포구는 대중교통의 요충지인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적은 임대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인디밴드로 대표되는 젊은 트렌드의 아이콘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발전하였으나,
- 유명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여 주변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마포구 전지역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실제 지역문화를 이끌어 발전시킨 예술인과 상인들은 밀려나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따른 현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는 것이며, 사유재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이해관계가 형성된 임대인, 임차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번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홍보해야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